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국내에서 생산된 소금과 수입되는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고,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금의 포장·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“생산 연월”을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“연월일”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산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표시기준을 통일하여 규제 완화(안 제19조제1항제3호)
- 나. 법 제21조제7항 및 제53조제4에 따라 출입·조사·점검·검사·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정함(안 제30조의2 신설)
- 다. 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약처 고시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소금의 품질검사 항목 중 “총염소” 삭제(안 별표 3)
- 라.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는 “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도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(안 별표 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의견조회(입법예고와 동시 실시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1. 1. 7. ~ 2. 1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4) 법제처 심사 전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생산 연월(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)”를 “생산 연월 또는 생산 연월일(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관계공무원의 증표)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·조사·점검·검사·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.

별표 3 제3호 나목 1) 표 구분란의 “일반성분”과 “유해성분”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총염소(%)란을 삭제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사확인표시에 대한 경과조치) 품질검사기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

표시를 할 수 있다.

검사확인 표시(제17조제5항제1호 관련)

1. 기본도안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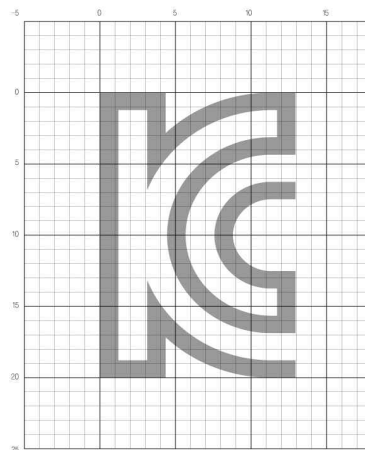
소금검사확인



품질검사기관명

2. 도안 요령

가. 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.



나. 마크 및 글자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다. 마크 및 글자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을 사용한다.



라.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(KS A 0062에 따른 10Y R 6/4 색채)과 은색(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)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남색,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을 사용할 수 있다.

	금색 10YR 6/4
	은색 N 7
	검정색 N 2

3. 표시방법

- 가.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측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바꿀 수 있다.
- 나. 소비자가 알기 쉽게 날인 또는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다.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는 경우, 아래와 같이 마크 우측에 “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.”를 표시할 수 있다.

소금검사확인



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
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.

품질검사기관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소금의 품질표시 기준)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·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 략) 3. <u>생산 연월(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)</u> 4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9조(소금의 품질표시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생산 연월 또는 생산 연월일(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)</u> 4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30조의2(관계공무원의 증표)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·조사·점검·검사·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.</u>